

# 2022년 품질관리 감리결과 개선권고사항

이번 개선권고사항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항에 따라 공개되는 것으로서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41개 회계법인 중 금융감독원이 2022년에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한 17개 회계법인에 대한 품질관리 감리 결과를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회계법인에 대하여 매년 순차적으로 실시하는 품질관리 감리 결과 개선권고사항을 그 다음 해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 이 중 삼정, 안진, 대주, 신한회계법인을 제외한 13개 회계법인이 최초공개

2023. 7. 4.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

# I. 품질관리 감리 개요

## 1. 품질관리 감리의 정의 등

- **(정의 및 목적)** 품질관리 감리는 「외부감사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감사인이 감사업무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시스템을 적절히 설계·운영하고 있는지를 점검함으로써 회계감사의 공정한 수행과 감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제도
  - **(재무제표 심사·감리 및 감사보고서 감리와의 차이점)** 재무제표 심사·감리는 재무제표에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이 있는지를 검토하여 발견된 특이사항에 대하여 회사로부터 소명을 들은 후에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수정을 권고하거나(심사), 회계처리 위반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자료제출 요구 또는 의견진술 요구 등을 통해 조사하는(감리) 업무이며,
    - 감사보고서 감리는 감사인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하면서 회계감사기준 등을 준수하였는지를 사후 점검하는 업무로서,
    - 상기의 심사·감리는 특정 재무제표 또는 개별 감사업무에 대하여 점검하는 업무인 반면, 품질관리 감리는 감사인의 감사업무와 관련한 품질관리 정책과 절차의 전반에 대하여 그 구축 및 운영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업무임
  - **(품질관리시스템의 6대 요소)** 감사인은 품질관리기준\* 등에 따라 품질관리 제도를 수립할 때 다음과 같은 6가지 구성요소 별로 정책과 절차를 설계하여 운영하여야 함 [(참고1)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별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내용' 참조]
- \* 「외부감사법」 제17조에 따라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정하며, 감사인의 업무설계 및 운영에 관한 기준으로서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절차, 감사인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내부통제 등 감사업무의 품질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
- ①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회계법인의 경영진 등 감사 업무의 품질관리를 위한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는 자의 책임
  - ②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감사인의 독립성 등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 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 ③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대상 회사의 위험에 대한 평가 등 감사업무를 맡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
  - ④ 인적자원 - 감사업무수행 인력 및 감사업무의 품질관리 인력의 운영
  - ⑤ 업무의 수행 - 감사업무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방식
  - ⑥ 모니터링 - 상기 사항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업무와 관련된 사항

## 2. 품질관리 감리 대상선정 및 감리 수행방법

- **(대상 선정)**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15호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위탁받아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 (‘등록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 ‘감사인 지정군 분류기준’\*을 참고하여 소속 공인회계사 수, 감사대상 상장사 수 등에 따라 회계법인의 규모를 분류하고, 규모별 목표 감리주기 또는 외국 회계감독기관의 공동감리 요청 등을 고려하여 연도별 품질관리 감리 대상을 선정\*\*
    - \*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의 규모에 따라 지정 가능한 회계법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등록 회계사 수, 감사업무 매출액, 손해배상 능력 등을 고려하여 ‘가,나,다,라 및 마군’으로 분류하며, 상세한 내용은 ‘(참고2) 舊감사인 지정군 분류기준’ 참조
    - \*\* 감리 대상 선정시 “군” 분류는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22.7.18.발표)」에 따른 “군” 분류 요건이 조정되기 이전 기준
- **(감리 수행방법)** 감사인의 본점(주사무소)을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현장 감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의 제출, 의견의 진술 또는 보고 요구 등의 방법을 활용하되, 필요시 경영진 및 관련자에 대한 질의 및 답변 등도 실시

## 3. 품질관리 감리결과 처리절차 및 공개범위

- **(처리절차)** 감사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선권고사항)이 있는 경우 감리위원회 심의 및 증권선물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그 결과는 해당 감사인에게 통보하고, 외부에도 공개
- **(공개범위)** 개선권고사항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경영상 비밀’, ‘경미한 개선권고사항’\* 등은 예외적으로 비공개
  - \* 경미한 개선권고사항 여부는 위반행위의 반복여부, 표본검사(Sampling test) 결과 위반 정도(건수, 비율 등), 개선여부 및 증권선물위원회 판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II. 2022년 품질관리 감리 실시내용

### 1. 감리대상 회계법인 개요

□ 금융감독원은 2022년 17개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감리를 실시

- 동 회계법인들을 '22.3월말 기준으로 감사인 지정군에 따라 구분하면, 가군 2개, 나군 3개, 다군 6개, 라군 6개로 분류됨

#### 2022년 품질관리 감리 대상 회계법인 현황

(단위: 사, 명, 백만원)

분류	회계법인	일반현황*			재무현황*			
		등록 회계사수	외부감사 회사수	주권 상장	총자산	자기 자본	매출액	외부 감사
가군	삼정	1,947	1,083	220	249,328	95,433	761,020	191,829
	안진	1,017	682	113	216,383	35,521	447,701	113,278
나군	대주	461	1,452	202	78,800	15,054	129,550	58,415
	신한	278	876	121	51,009	20,725	80,238	34,548
	우리	211	649	86	32,806	9,657	59,676	25,515
다군	삼화	129	426	42	22,930	10,479	41,866	12,565
	안경	66	214	36	10,549	5,064	16,302	10,310
	예교지성	66	292	18	15,614	6,903	23,211	7,011
	정진세림	76	292	39	11,887	5,027	21,635	10,561
	진일	66	198	23	7,589	3,953	19,174	6,453
	태성	120	450	46	21,106	10,946	42,926	14,651
라군	동아송강	65	165	21	7,693	2,407	18,613	3,721
	선일	56	199	29	9,765	5,235	2,984	986
	선진	46	205	19	8,247	2,581	19,645	6,191
	세일원	52	193	18	10,020	3,846	12,626	5,811
	예일	53	115	16	8,846	2,902	18,964	4,564
	한길	52	192	11	12,190	7,470	15,073	6,210

\* 회계법인별 최근 사업연도말 기준

### 2. 회계법인 분류별 감리실시 현황

분류	가군	나군	다군	라군
평균 감리일수	27일	26일	17.8일	17.8일
평균 투입연인원*	135명	104명	67.7명	67.7명

\* 연인원 : 감리일수 × 투입인원

### 3. 주요 감리사항

- 감사품질 제고 및 사전예방 중심의 회계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과거 품질관리 감리 결과 주요 미흡사항 등을 감안하여 다음의 사항들을 중심으로 감리를 실시하였음
  - '22.3월말 기준 40개 등록법인이 등록 이후 1년 이상 경과하였으므로 등록 요건 유지 여부에 대해 점검
  - 감사업무 수행시 감사인의 비감사용역 관련 독립성 정책의 효과적 구축 및 적절한 운영 여부
  - 과도한 업무수임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방지 및 감사보수 상승에 상응한 적정시간 투입 등을 위한 감사시간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감사 유도를 위하여 관련 절차 구축 현황 등 점검
  - 기타 주요 회계감사기준 등 준수, 품질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작동 여부 등

## III. 2022년 품질관리 감리 결과

### 1. 감리결과 개요

#### < 회계법인 분류별 · 구성요소별 평균 지적건수\* >

(단위: 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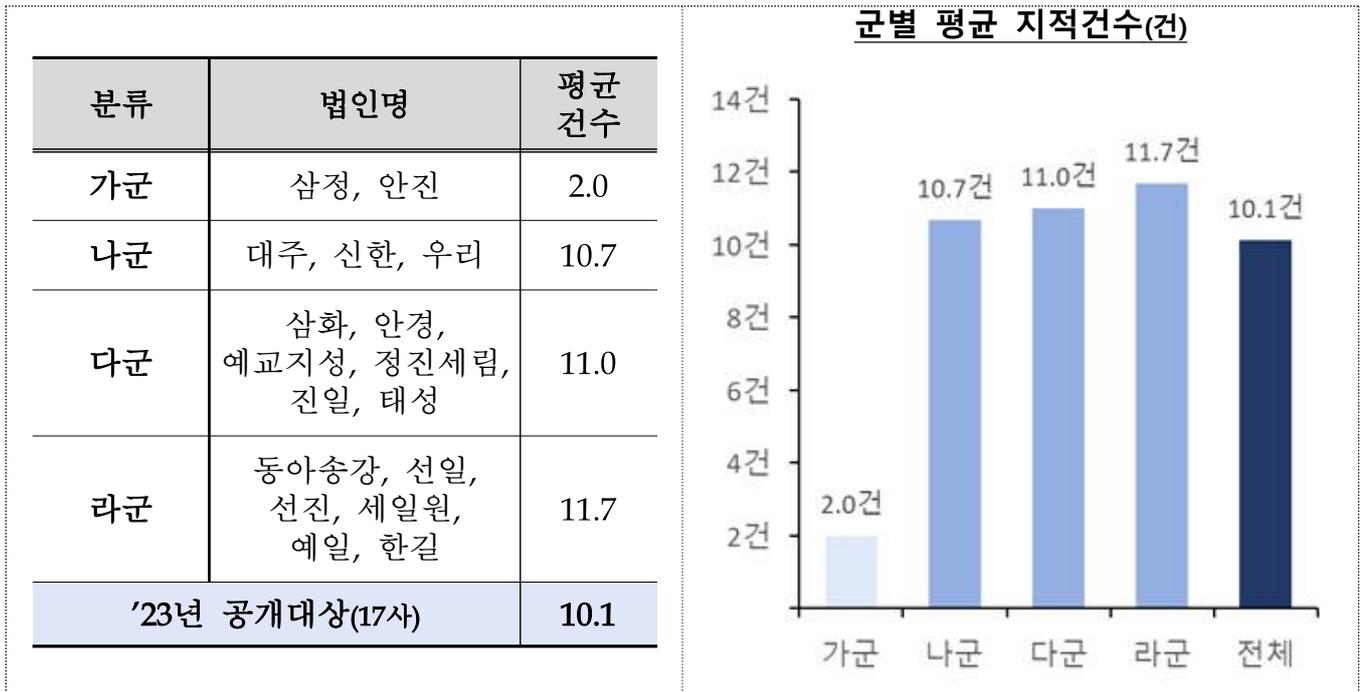
분류	전체		리더십 책임		윤리적 요구사항		업무의 수용과유지		인적자원		업무의 수행		모니터링	
	평균 건수	비율	평균 건수	비율	평균 건수	비율	평균 건수	비율	평균 건수	비율	평균 건수	비율	평균 건수	비율
전체	10.1	100.0	1.6	15.7	1.9	18.6	0.9	8.7	2.1	20.3	2.8	27.9	0.9	8.7
가군	2.0	100.0	-	-	-	-	-	-	1.0	50.0	1.0	50.0	-	-
나군	10.7	100.0	2.0	18.8	2.0	18.8	1.0	9.4	2.0	18.8	3.0	28.1	0.7	6.3
다군	11.0	100.0	1.5	13.6	2.3	21.2	1.0	9.1	2.0	18.2	3.0	27.3	1.2	10.6
라군	11.7	100.0	2.0	17.1	2.0	17.1	1.0	8.6	2.5	21.4	3.2	27.1	1.0	8.6

\* 공개제외된 경미한 개선권고사항 제외

## 2. 감사인별 품질관리 감리 지적현황

- 17사의 품질관리 감리결과 총 지적건수는 172건(법인당 10.1건)이며, '가'군을 제외한 '나~라'군 회계법인 평균 지적건수는 전체 회계법인 평균 지적건수를 상회
  - **(가군)** '가'군 회계법인은 구성요소별 지적건수가 '나~다'군에 속한 회계법인에 비해 현저히 적음
    - 이는 해외 대형법인과외의 제휴를 통한 품질관리시스템 개선 노력 및 품질지향의 조직문화 달성을 위한 통합관리 체계 마련에 주로 기인
  - **(나~라군)** '가'군 외 나머지 회계법인은 군별 평균 지적건수 차이가 크지 않음
    - 품질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부족, 통합관리 체계의 실질적 운영 미흡 등에 따른 미흡사항 다수 발견
    - 품질관리 감리 지적건수는 군별로 라군(11.7건), 다군(11.0건), 나군(10.7건) 순

### < 회계법인 군별 평균 지적건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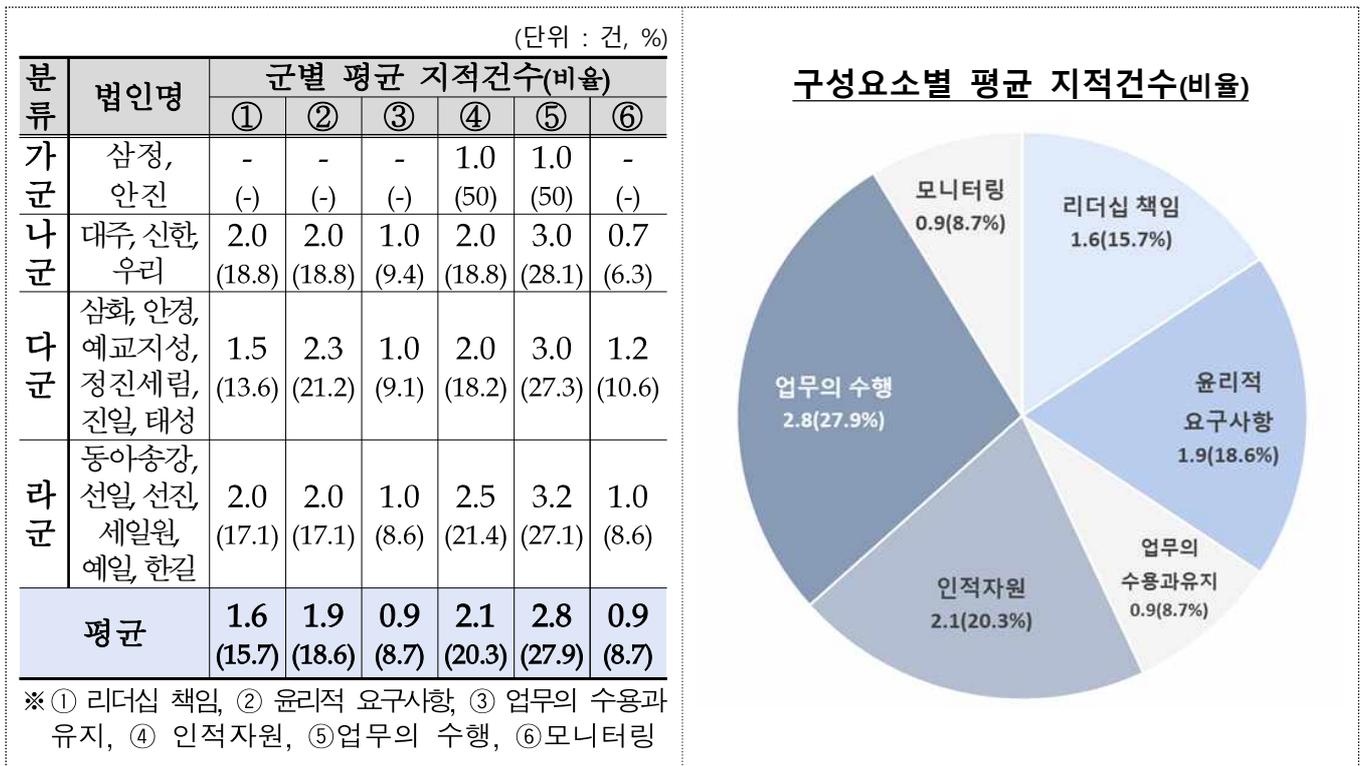
\* 공개제외된 경미한 개선권고사항 제외

### 3. 품질관리 구성요소별 지적사항

□ 17사의 품질관리 6대 요소에 대해 점검한 결과 6대 요소 전반에서 미흡사항이 발견

- 평균 지적건수는 업무의 수행(2.8건, 27.9%), 인적자원(2.1건, 20.3%), 윤리적 요구사항(1.9건, 18.6%) 순으로 많으며, 업무의 수행 및 인적자원 관련 지적사항이 전체 지적사항의 48.2% 차지

< 품질관리 구성요소별 평균 지적건수 및 비율\* >



\* 공개제외된 경미한 개선권고사항 제외

□ 품질관리 6대 구성요소별 주요 점검 및 지적사항은 다음과 같음

- **(리더십 책임)** 품질 지향의 조직문화 구축을 위한 법인의 정책과 절차의 적정성 및 운영 실태 점검
  - 품질관리 업무에 대한 대표이사에 적절한 권한과 책임 부여 등 미흡
  - 구성원의 성과평가지 구체적 평가 기준이 미흡하거나, 성과급 지급시 품질 관련 구성원의 기여도를 반영하는 절차 운영 등이 미흡

- **(윤리적 요구사항)** 감사업무 수행시 재무적 이해관계 등 이해상충에 따른 독립성 위반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 및 운영체계 점검
  - 독립성 준수 의무자가 독립성 신고를 누락 또는 지연하는 등 독립성 정보의 수집·관리가 미흡
  - 감사업무 등 수입시 독립성 점검절차 운영이 미흡 등
- **(업무의 수용과 유지)** 감사계약 및 감사계획 단계에서 기업에 대한 이해 등을 통한 위험평가의 적절성 및 그 결과를 반영한 감사절차의 수행여부 점검
  - 계약 전 위험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거나, 위험평가과정에서 파악된 위험 등의 감사절차에 반영하는 절차 운영 등이 미흡
- **(인적자원)** 과도한 업무수입에 따른 감사품질 저하 방지 및 감사 보수 상승에 상응한 적정시간 투입 등을 위한 감사시간 관리실태 점검
  - 감사투입시간을 지연 입력·승인한 사례 등이 발견
  - 감사대상기업의 특성, 감사참여자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감사업무를 배정하는 등 업무배정의 절차 운영이 미흡
- **(업무의 수행)** 감사보고서 발행전 사전심리 등 업무품질관리검토 관련 통제절차와 운영실태 및 감사조서의 관리실태 등을 점검
  - 사전심리 관련 통제절차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미흡하거나, 감사조서 취합 및 관련 내부통제절차 운영 등이 미흡
- **(모니터링)**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 절차 구축 및 운영, 감사업무수행 관련 모니터링(사후심리)의 적정성 점검
  - 사후심리 절차 운영이 미흡하거나 사후심리 결과 파악된 미비점에 대한 후속조치 등의 문서화가 미흡 등

## 2. 주요 개선권고사항

### < 개선권고사항 이용시 유의사항 >

본 개선권고사항은 품질관리 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 및 공개를 결정한 품질관리요소별 미비·미흡사항을 요약한 것으로서 단순히 개선권고사항 지적건수 등으로 회계법인간 품질관리 수준을 비교·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음의 사항들을 감안하여 이용할 필요

- (1) 회계법인별 감리 실시시기 및 대상기간이 다른 점
- (2) 각 개선권고사항이 회계법인의 감사업무 품질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점
- (3) 유사한 개선권고사항일지라도 회계법인별 미비·미흡한 정도에 차이가 있는 점
- (4)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사항이 공개시점에 이미 개선이 되었거나 개선이 진행중일 수 있는 점 등

### 가. 개선권고사항의 분류

#### (1) 미설계

- 품질관리정책과 절차가 설계되어 있지 않거나, 설계되어 있더라도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기에 현저히 미흡한 경우

#### (2) 미운영

-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는 적절하게 설계되어 있으나, 이를 전혀 운영하지 않고 있거나 현저히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 (3) 일부 미흡

- 설계된 품질관리정책 및 절차가 일부 미흡한 경우, 설계된 절차에 따른 운영이 일부 미흡한 경우, 또는 설계 및 운영이 동시에 일부 미흡한 경우

## 나. 회계법인별 주요 개선권고사항

### (1) 「가」 군 회계법인

#### 1) 삼정회계법인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일부미흡

##### ○ 인적 자원

- 감사보고서일 이전에 시스템에 입력한 감사시간을 감사보고서일 이후에 승인할 경우, 감사보고서상 외부감사 실시내용에 포함하지 않도록 감사시간 관련 통제절차를 설계하였으며, 시스템에 입력한 감사시간과 외부감사 보고서상 감사시간의 차이 발생원인 등에 대해 품질관리실에서 모니터링을 수행하지 않는 등 감사시간 관련 통제절차가 일부 미흡함

##### ○ 업무의 수행

- 사전심리를 수행하지 않고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사례, 업무품질관리검토 관련 문서화 미흡 및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투입시간이 내부권고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됨

## 2) 안전회계법인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일부미흡

### ○ 인적 자원

- 제출된 업무시간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 승인권자인 담당이사 등의 승인만으로 수정이 가능하여 수정사유 등의 적정성 검토 절차가 미흡하고, 예상 투입시간이 내부 스케줄 관리 시스템에 사전 입력되어 시간입력 시스템에 자동 반영된 경우 동 시간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절차가 없어 입력시간의 정확성 검토가 미흡함

### ○ 업무의 수행

-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투입시간이 내부 권고수준(총감사시간의 1%)에 미달하는 경우가 있어, 충실한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할 소지가 있음

## (2) 「나」 군 회계법인

### 1) 대주회계법인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일부미흡

####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보다 더 큰 규모의 상여금을 수입 실적에 따라 사업부별·분기별로 지급하나 기준(재원,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 등을 내규로 정하지 않아 감사품질을 보상에 반영하는 방법이 미흡하고,

내규의 성과평가 등급별 지급률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 업무수행이사에게는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거나, 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과 실제 성과급 지급률이 상이함

####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감사업무 착수 및 종결 시점에 징구하는 독립성준수확인서 조서 중 일부에서 일자 누락, 서명 미비 등이 있었고,

소속회계사 혹은 배우자의 겸직관계 현황, 금융기관 등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ERP시스템에 불완전하게 입력함

- 반기별 주식거래 점검 시 주식 미거래로 신고할 경우 증권계좌 보유 현황, 거래내역 등을 확인없이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만으로 점검을 종결하여 해당 구성원의 주식거래 여부 확인이 누락될 소지가 있음

####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22사업연도에 체결한 신규 감사계약 중 일부를 표본 점검한 결과, 품질 관리실 승인 이전 감사계약을 체결한 사례가 있으며,

위험이 높은 회사에 대해 계약전위험평가표의 개별 항목 평가를 최종위험과 연계하여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이 없고 위험평가가 일부 미흡한 사례가 확인되고,

'21~'22사업연도 계약전위험평가표를 표본점검한 결과 전임감사인 관련 항목 등의 일부 항목이 누락되는 등 작성 미흡 사례가 확인되며,

감사계약 체결후 추가 정보가 입수되면 감사위험을 재평가하고 있으나 '21 사업연도 감사대상회사의 재평가조서를 표본점검한 결과,

감사의견 변형 등 재평가 사유가 있음에도 해당 정보 미기재, 재평가조서 누락 등 작성이 미흡한 사례가 확인됨

## ○ 인적 자원

- 감사업무시간의 관리절차와 관련하여 기한경과 후 입력, 승인요청, 승인 또는 동 절차를 누락한 사례가 일부 확인되며,

승인된 감사업무시간의 변경 필요시 변경사유 등을 기재한 후 승인권자에게 수정승인을 요청하고, 타당한 경우 수정을 승인하고 있으나,

감리대상기간 중 기승인된 감사업무시간에 대한 수정요청 내역에 대한 표본감리결과 일부는 수정요청 사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업무의 수행

- 감사대상회사와 산업의 특성 및 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사계획 및 감사 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기업 및 기업환경의 이해 조서, 위험평가 관련 조서 및 전산감사 전문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이해 관련 조서 등이 충실히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충분한 감독 및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음
- 업무수행이사의 사전심리 요청기한 준수여부가 관리되지 않아 사전심리 투입시간이 권고기준에 미달한 경우가 있음

- '20~'21 사업연도에 발행한 외감대상 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조서 중 일부 감사 건은 기한을 경과하여 취합되었으며,

보관 중인 감사조서의 출고시 업무수행이사의 승인 후, ERP시스템을 통해 출고를 요청하여야 하나 각 분사무소는 ERP시스템이 아닌 조서관리대장으로 관리하고, 출고시 업무수행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는 등 분사무소의 감사조서 입·출고 통제가 일부 미흡하고,

감사조서 수정시 ERP시스템에 수정 관련 사항을 입력하고 업무수행이사의 승인을 받은 후 수정해야 하나 수정 관련 사항을 기록하지 않거나 기재가 미흡한 사례가 있으며,

서면조서 대여 후 재입고시 원형유지 여부 확인에 대한 통제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대여된 감사조서가 임의변경, 추가, 삭제될 소지가 있음

## ○ 모니터링

- 사후심리 관련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감사계약의 경우 내규로 사후심리에 투입하도록 권고한 시간에 미달하는 등 일부 사후심리 절차를 미흡하게 운영한 사실이 있음

## 2) 신한회계법인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일부미흡

###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내규와 달리 본부장 및 지점장(분사무소장)이 별도의 승인 절차 없이 결정되고, 지점장(분사무소장)의 권한 및 책임 등에 대한 규정이 미흡함
- 특별성과급 외 성과급은 각 팀에서 결정하여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문서화하지 않아 품질우선 보상 여부의 확인이 곤란함

###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감사계약 체결 전 이메일 등을 통한 감사팀원 외 구성원의 독립성 충족 여부 확인 절차가 미흡하고, 감사업무 착수 및 종결 시점에 징구하는 독립성준수확인서에서 일부 감사업무 참여자의 서명 누락 등 사례가 발견됨
-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중 일부에 대해서는 계약 전 위험평가를 수행하지 않아 담당이사 등의 임의적인 구분에 따라 독립성 점검이 누락될 소지가 있고,

소속회계사 혹은 배우자의 고용관계 현황, 감사대상회사의 지배,종속회사 및 특수관계자 정보의 ERP시스템상 불완전 입력 또는 갱신 미흡 사례가 발견되며,

소속 공인회계사의 내규상 주식거래 입력기한 초과 입력 사례, 주식거래에 대한 표본점검 시 예탁결제원 자료상 확인되는 증권계좌에 대한 거래내역 점검 등 주식거래의 완전성 확인이 미흡함

##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계약의 최종 위험수준이 높게 평가된 회사에 대하여 감사계획과 연계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계약 전 위험 평가 이후 전기 감사의견 변형 등 재평가가 필요한 상황을 확인하여 평가결과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미흡하며,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수임 여부를 평가하면서 감사계약 체결 이후 위험 평가를 수행하거나, 회사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입력하는 등 계약전 위험평가의 일부 미흡 사례가 발견됨

## ○ 인적 자원

- 이사 승진시 업무품질과 윤리적 원칙 등 품질관련 요소를 반영하는 절차의 운영이 일부 미흡하고,

감사업무 배정 시 업무수행이사별 이사의 전문성, 가용시간 및 역량 등을 고려하는 절차 운영이 일부 미흡함

- 입력·승인 관련·수정 등에 대한 통제 및 검토 절차가 미흡하여 업무시간의 사전·지연입력 및 지연승인·미승인 사례 등이 발견되었고, 위반 사항에 대한 법인 차원의 불이익 조치가 미비함

- ERP시스템상 집계된 감사업무 시간이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감사업무 시간과 불일치하거나 승인 전 입력 기준의 시간이 공시되는 등 감사업무시간의 공시 관련 설계 및 운영이 일부 미흡함

## ○ 업무의 수행

- 감사대상 회사의 산업 특성 및 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사계획 및 감사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관련 조서, 전산시스템의 이해 관련 조서 등 작성 미흡 사항에 대한 충분한 감독 및 검토가 미흡함

-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내규상 요청기한의 경과 후 검토 요청 사례가 발견되는 등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할 위험이 있음
- 감사조서가 60일 경과 후 취합 사례가 발견되거나, 서면조서의 생성 여부 및 취합일 관리가 미비한 등 감사조서의 취합 관련 절차가 일부 미흡하고, 조서의 보관·폐기·입출고 등을 조서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엑셀 파일 또는 외부 보관 업체의 목록을 이용하여 관리하며, 내규상 연 1회 감사조서 관리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있으나, 별도의 점검을 수행하지 않아 적절한 보관 여부 확인이 미흡함

## ○ 모니터링

- 사후심리 수행내역 등을 문서화하지 않아 사후심리 시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내용에 대한 검토 여부 확인이 곤란하며, 사후심리 결과 발견된 미비점의 영향 및 적합한 개선조치에 대한 판단 근거 및 향후 시정조치 계획 등 문서화가 미비하여 미비점 관련 사후조치의 적절성을 판단이 어렵고,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사후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절차를 미운영하거나 중요한 지적사항에 대한 법인 차원의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후심리 시 후속조치 관련 절차의 운영이 미흡함

### 3) 우리회계법인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일부미흡

####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관리 담당이사를 대표이사가 지정하고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원총회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함으로써 회계법인의 대표자가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도록 하는 외감법규 등에 일부 부합하지 않으며,

내규상 일부 내용이 미흡하거나 법규 개정사항 미반영, 내규 간 내용 불일치 사례 등이 발견됨

- 임직원에 대한 성과평가기준에 감사품질과 관련된 요소가 70% 이상 포함 되도록 하고, 동 평가결과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으나,

동 평가상여금 외에 더 큰 규모의 특별상여금을 구체적인 기준 없이 감사팀별로 결정하여 지급하고 지급근거를 문서화하지 않아 품질우선의 보상여부 확인이 곤란함

- 특정 감사팀 차원에서 자금운용 및 차입금 관리가 이루어지는 등 법인 전체수준에서의 자금관리가 미흡함

####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감사업무 참여자가 독립성준수확인서에 서명을 누락하거나, 서명일을 확인할 수 없는 등 독립성 확인 미흡 사례가 발견되며,

ERP시스템상 재무적 이해관계 입력 선택 항목 중 '해당사항 없음'이 없어 시스템 미입력시 독립성 위반 여부 또는 입력 누락 여부 확인이 어렵고,

고용관계 및 감사대상 회사의 지배, 종속회사 및 특수관계자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에 불완전 입력 사례가 있음

- 신규 감사 예정 고객 중 상장법인에 대해서만 구성원의 독립성 충족 여부를 메일로 소극 회신받고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독립성 충족 여부가 완전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일부 비감사업무는 품질관리실이 검토하지 않아 담당이사 등의 임의적인 구분에 따라 독립성 점검이 누락될 소지가 있음

####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업무의 수용·유지를 위한 위험평가를 형식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험평가 수준이 높은 경우, 승인 또는 감사업무계획 반영 절차가 미흡하고,

업무의 수용·유지 결정 이후 발생한 중요한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평가를 재수행하는 절차가 미흡함

#### ○ 인적 자원

- 감사업무 참여자의 지연입력 및 승인권자의 지연승인, 미승인 사례, 감사 보고서 공시 감사투입시간이 승인권자의 승인 전 감사업무참여자의 입력 시간 기준 집계된 사례가 있고,

업무수행이사 승인 감사시간과 감사보고서상 공시된 감사시간이 상이한 경우에도 별다른 제한없이 공시가 이루어지는 등 감사시간 관련 통제절차가 일부 미흡함

- 계약등록 후 추가되는 감사업무 참여자의 징계 내역 확인 절차가 일부 미흡하여 소속 공인회계사의 감사업무 제한 기간 중 감사참여 사실이 있음

#### ○ 업무의 수행

- '20~'21사업연도 중 수행한 감사업무의 업무수행이사 감사투입시간을 검토한 결과, 내부권고 수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됨

- 감사팀의 사전심리 요청 후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지정되거나, 사전심리 투입시간의 내부권고 수준 충족 여부 항목이 사전심리 담당자 성과평가 요소에 포함되지 않아 투입시간의 내부권고 수준 미달 사례가 있고,  
품질관리실 소속 회계사의 사전심리 미수행 감사업무의 경우 심리 요청 기한 준수 여부를 법인 차원에서 관리하지 않는 등 충분하고 적합한 품질 관리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할 소지가 있음
- 불출된 서면조서의 재입고 시 원형 유지를 확인하는 통제절차가 미비하고, 본점 내 조서 창고 보관 감사조서에 대한 보관 목록을 관리하지 않으며,  
외부창고에 보관 중인 감사조서 일부가 보관목록에서 누락되어 있는 등 감사조서 보존 관련 통제절차가 미흡함

### (3) 「다」 군 회계법인

#### 1) 삼화회계법인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일부미흡

#####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관리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과 품질관리실장의 선임 권한이 있는 자를 규정하지 않는 등 품질관리 책임 및 권한에 대한 업무분장이 불명확하며, 품질관리실장이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운영위원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관련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 품질관리요소를 고려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 지급 시 각 본부장이 성과급 지급률을 임의로 결정하는 등 성과평가와 보상의 연계성이 미흡함

#####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감사업무 전 감사참여자의 독립성 준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팀 외의 구성원의 독립성 충족여부를 확인하지 않거나, 품질관리실이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중 일부를 검토하지 않는 등 독립성 확인이 미흡하고, 감사업무 계약 체결 즉시 계약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주식 취득이나 비감사업무 수임 시 독립성이 적절하게 점검되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시스템상 주식거래 내역을 임의삭제 가능하거나 거래내역을 적시에 등록하지 않는 등 독립성 점검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 관련 절차 및 운영이 미흡함
- 감사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품질관리실이 적시에 인지할 수 있는 통제절차가 없거나 주식거래 샘플 점검 시 예탁결제원 자료상 확인되는 증권계좌에 대해서만 점검하는 등 독립성 점검 절차가 미흡함
- 구성원이 주식거래를 적시에 등록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징계 또는 성과평가 반영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징계절차 운영이 미흡함

##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업무 수용과 유지를 위한 위험평가 시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된 위험에 대한 대응 및 위험평가 이후 재평가 필요 상황 등에 대한 정책과 절차가 미비하며, 위험평가표의 형식적 작성 등 업무의 수용 및 유지 관련 절차가 미흡함

## ○ 인적 자원

- 품질관리 요소를 반영한 이사 승진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고, 구성원의 업무와 역할에 상응하는 체계적 교육·연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업무 배정 시 구성원의 적격성과 업무량 및 가용시간 등 역량을 점검하는 절차가 없고, 배정 근거를 문서화하지 아니함
- 감사업무시간 조기·장기 지연입력, 지연승인·미승인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해당 위반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며, 업무시간 수정 시 적정성 검토가 미흡하며, 입력시간 기준으로 감사보고서 공시시간을 집계하는 등 통제 절차가 미흡함

## ○ 업무의 수행

- 사전심리 수행 투입시간이 내부 권고수준에 미달하거나 감사보고서 발행 기한에 임박한 사전심리 요청 등 사전심리 검토를 위한 충분한 시간이 제공되지 않음
- 다수의 감사조서가 60일을 경과하여 취합되었고, 반출된 감사조서의 입고 시 임의변경 방지장치가 미비하며, 분사무소의 경우 감사조서 취합완료 후 분사무소 창고 보관 및 감사조서 관리대장 수기 관리 등 입·출고에 대한 통제절차가 미비

## ○ 모니터링

- 감리결과 조치 등 내규상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징계를 부과하거나 징계 필요 여부에 대해 검토한 실적이 없는 등 징계절차 운영이 미흡함
- 내규에는 품질관리실장이 고충과 진정을 담당하도록 되어 있으나 홈페이지에는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적격한 권한 없는 직원 이메일을 고충과 진정 접수용 이메일로 사용하는 등 고충과 진정에 대한 의견개선 경로의 운영이 미흡함

## 2) 안경회계법인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일부미흡

###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소속회계사 혹은 배우자의 겸직관계 현황, 금융기관 등과의 채권·채무 관계를 ERP시스템에 불완전하게 입력함

- 반기별 주식거래 점검 시 주식 미거래로 신고한 구성원의 증권계좌 보유 현황,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자료만 확인하는 것으로 점검을 종결하여, 주식거래를 확인하지 못할 소지가 있으며,

감사 수임시 구성원들에게 독립성 준수 여부와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발송하는 독립성 확인 메일에 대한 회신이 의무화되지 않아 독립성 충족여부 확인이 누락될 소지가 있고,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수임시 품질관리실에서 계약서 등 증빙 검토없이 승인하여 독립성 충족여부 확인이 누락될 소지가 있음

###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계약 전 위험평가지 개별 항목별 평가 내역이 최종 위험수준(높음, 보통, 낮음 중 선택) 결정시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담당이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최종 위험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일관된 기준 없이 감사의견 변형 등 높은 위험이 예상됨에도 최종위험(높음, 보통, 낮음 중 선택)을 '낮음' 또는 '보통'으로 평가하고 담당이사 및 승인권자의 의견도 기재하지 않는 등 위험평가를 형식적으로 운영하였고,

또한, 감사계약 체결 이후 전기 감사의견변형 여부 등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더라도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위험을 재평가하지 않고,

일부 계약전위험평가표는 업무수임시 담당이사 및 승인자의 의견, 최종결론 사유 모두를 미기재하는 등 미흡하게 작성되었음

## ○ 인적 자원

- 실제 업무수행일로부터 최대 20일 경과 후 감사업무시간이 검토·승인될 수 있고, 감사업무 전 입력 및 기한 경과 후 입력에 제한이 없는 등 감사업무시간 입력에 대한 통제가 일부 미흡하여, 감사업무시간 기록의 적시성 및 정확성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ERP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감사업무시간중 업무수행일 이전에 결재요청 또는 승인한 사례, 기한 경과한 후 결재요청 또는 승인한 사례가 있음

## ○ 업무의 수행

- 감사대상회사와 산업의 특성 및 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사계획 및 감사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기업 및 기업환경의 이해 조서, 위험평가 관련 조서 및 전산감사 전문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이해 관련 조서 등이 충실히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충분한 감독 및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가 있음

- 사전심리자의 '심리사항 점검표'를 감사조서에 포함하나, 동 점검표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작성되어 사전심리자의 검토사항이 기재되지 않는 등 감사업무의 실제 중요한 검토 내용에 대한 문서화가 미흡하고,

감사보고서 발행예정일의 3일전까지 사전심리를 요청해야 하나, 일부는 사전심리 요청기한을 준수하지 않는 등 충분한 사전심리 시간확보가 미흡하였음

- 실물조서 열람사유 등을 기재하지 않고 열람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으며,

실물조서의 대여 후 재입고시,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유무를 감사조서대출관리대장에 등재한 후 입고하여야 하나 동 절차를 수행하지 않고 있음

## ○ 모니터링

- 사후심리 결과 발견된 미비점의 영향 평가 및 해당 미비점이 신속한 시정 조치 요구여부 등을 고려하지 않아 부적합한 보고서나 중요 절차 누락 등이 적절히 수정 및 보완되지 않을 소지가 있음

### 3) 예교지성회계법인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일부미흡

####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를 대표이사가 지정하고 사원총회 추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계법인의 대표자가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도록 하는 외감법규 등에 일부 부합하지 않으며,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가 품질관리 및 윤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법인 운영 관련 주요 의사결정기구인 경영위원회의 구성원에서 제외되어 있어 품질관리 관련 이슈를 식별 및 이해하고 적절한 정책과 절차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

- 업무수행이사에 대한 평가시 일부 평가항목에 대해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평가 대상 선정 및 점수 산출시 일부 오류가 발견 되었으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보상 및 징계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등 성과평가 결과가 보상으로 연결되는 절차 마련이 일부 미흡함

####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감사업무 착수 및 종결 시점에 징구하는 독립성준수확인서 조서에서 일자 누락, 서명 미비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고,

소속회계사 혹은 배우자의 겸직관계 현황, 금융기관 등과의 채권·채무관계를 ERP시스템에 불완전하게 입력함

- 비감사업무 수임시 담당이사가 ERP에 관련 정보를 등록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 비감사업무 매출처가 실제와 다른 업체로 등록된 경우, 계약체결 사실은 등록했으나 비감사업무의 감사업무와의 이해관계 상충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등이 발견되었고,

감사업무 수임시 구성원들의 독립성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 메일의 회신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고, 주식 미거래로 신고한 구성원에 대한 점검 절차가 미흡함

####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계약의 최종 위험수준이 담당이사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고, 위험평가표의 일반정보 항목별 작성 미흡, 업무수행이사 의견 미기재 등 작성 미흡 사례가 확인되었으며,

감사계약 체결 이후 추가 정보 입수시 위험을 재평가하지 않고, 식별된 이슈를 감사계획과 연계하는 절차가 미흡함

#### ○ 인적 자원

- 내규로 정한 감사업무시간 입력 및 승인 기한이 감사업무시간 집계적시성 확보 측면에서 미흡하고,

업무 수행전 감사업무시간 입력이 가능하고, 입력기한 경과후에도 입력에 제한이 없는 등 입력에 대한 통제 절차가 미흡하며,

승인된 감사업무시간은 본부장 및 품질관리실의 승인을 통해 수정할 수 있으나, 수정사유 기재 요구, 수정 가능기한 설정 등 구체적인 통제절차가 미흡하고, 일부 수정건에서 서면 승인 문서가 누락되는 등 승인 이후 임의 수정을 방지하는 통제절차가 미흡함

#### ○ 업무의 수행

- 감사대상회사의 전산시스템이 중요할 경우 이를 감사계획 등에 반영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으나, 실제 감사업무수행시 반영한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실질적인 운영이 미흡함

- 사전심리 요청기한 준수여부가 관리되지 않고, 사전심리의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품질관리검토자를 배정하여야 하는데도 업무수행이사와 품질관리 검토자간 교차심리를 실시한 사례가 발견되었음
- 일부 조서의 열람입출고 기록이 확인되지 않거나 열람사유가 기재되지 않는 등 조서 입출고 통제가 미흡하였고,

취합된 조서 대여 후 재입고시, 조서의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열람신청자 등으로부터 입고점검확인서를 수령하고 있으나, 작성 미흡 사례가 발견되는 등 조서의 임의변경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 운영이 미흡하였음

### ○ 모니터링

- 사후심리 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 기한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고 향후에 개선하도록만 하고, 개선 이행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있어 부적합한 보고서나 중요 절차 누락 등이 적시에 적절히 수정 및 보완되지 않을 소지가 있음

#### 4) 정진세림회계법인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일부미흡

#####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성과평가 점수를 잘못 산출하거나 평가 점수 및 등급을 임의로 조정하여 일부 업무수행이사의 성과급을 지급하고, 같은 등급 내임에도 내규와 달리 변동 성과급을 차등지급하는 등 품질지향 내부분화를 위한 보상체계 운영이 미흡함

#####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독립성 준수에 관한 확인서'가 지연, 미제출된 경우도 조치가 없고, 독립성준수 확인서 조서에 일자·서명이 누락되는 등 적절히 작성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채권채무관계, 주식거래의 ERP시스템 지연입력 및 품질관리실의 입력기한 미확인, 소속 회계사 배우자의 주식소유정보 관리 시스템 미운영 등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절차 운영이 미흡함

- 감사 수임시 독립성 확인 메일에 대한 회신을 의무화하지 않아 일부 구성원의 독립성 확인이 누락될 소지가 있고, 분기별 주식거래 점검시 점검 대상자에게 한국예탁결제원의 실질주주명부만 징구하여 거래 내역 확인이 충분하지 않고,

비감사업무 계약서의 ERP시스템 미등록으로 품질관리실의 점검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 감사대상회사의 비감사업무를 품질관리실의 승인전 수임하거나 계약서에 계약일자를 기재하지 않는 등 독립성 점검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이 미흡함

#####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업무 수임 여부에 영향을 주는 높은 감사위험이 있음에도 업무를 수임하기로 하는 경우 감사계획에 동 사항을 반영하였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미비하고,

감사의견 변형 여부,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 등 계약전 확인이 곤란한 사항은 계약 후에 기존 평가를 보완해야 하나 이에 대한 확인없이 감사

계약전 위험평가를 완료하는 등 업무의 수용 및 유지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이 미흡함

## ○ 인적 자원

- 구성원 채용시 이력서, 최근 5년간 징계 등의 조치 확인원 등 심사서류를 채용 이후에 제출받아 결격사유의 사전확인이 어렵고, 채용 품의서에 책임이사의 서명을 누락되거나 지연 결재되는 등 채용 관련 절차 운영이 미흡함
- 감사업무 수행 전이나 입력기한 경과후 감사시간 관리시스템에 감사업무 시간 입력허용 등 일부 입력통제가 없고, 승인권자의 검토없는 자동승인, 업무수행일 이전 승인요청, 승인가한 경과후 승인 등 감사업무시간 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이 미흡함

## ○ 업무의 수행

- 전산시스템이 복잡하고 중요한 감사대상 회사의 감사를 전산감사팀이 담당하도록 전산감사 수행 여부를 고려할 회사의 범위 등을 정하였음에도 규정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등 업무지시, 감독 검토 관련 절차 운영이 미흡함
- 사전심리시 검토사항과 업무팀의 의견 등을 감사조서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사전심리 이사 배정없이 교차심리를 실시하는 등 업무품질관리 검토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이 미흡함
- 전자조서에 대한 열람제한이 없고, 일부 감사조서의 취합기한 도과, 입출고 기록 누락, 재입고시 임의수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 미운영 등 감사조서 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이 미흡함
- 매년 징구하는 '비밀유지확인서'를 다수가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고, 법인 이메일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상용 이메일로 감사관련 정보를 송수신하는 등 감사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과 절차 마련이 미흡함

## ○ 모니터링

- 사후 심리대상임에도 심리를 누락하거나 사후심리 지적사항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감사계획 등의 기본 감사조서를 미작성하는 사례가 반복됨에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등 사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이 미흡함

## 5) 진일회계법인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일부미흡

###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책임과 품질관리실장 선임 권한이 대표이사가 아닌 사원총회에 부여되어 있어 외감법규에 부합하지 않고, 대표이사가 성과평가 대상자이면서 평가에 관여하여 성과평가의 합리성이 결여될 소지가 있음
- 품질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대한 투자 미흡으로 다수의 별도 시스템을 사용함에 따라 제한된 인력으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수행하기 어려움

###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독립성 확인을 위한 사원 배우자의 고용관계 및 채권·채무관계가 정확하고 완전하게 입력되지 않고, 구성원의 겸업·겸직에 대한 내부 승인 절차 운영이 미흡함
- 감사업무 수임시 구성원의 독립성 충족여부가 완전하게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사의 연속감사 제한 해당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함

###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계약전 위험평가가 완료되기 전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사례, 계약전 위험평가표 작성이 미흡한 사례 등이 발견되었고, 계약 체결 이후 발행된 감사보고서 등 추가정보를 입수하여 위험평가를 재수행하는 절차가 미흡함

### ○ 인적 자원

- 감사업무 배정시 특정 이사에게 감사업무가 집중 배정되는 등 업무수행이사의 업무량과 가용시간을 고려한 감사업무 배정이 미흡함

- 감사업무시간 승인권자 검토 없이 자동승인이 가능하고, 지연입력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여 다수의 지연입력 사례가 발견되었으며, 수정의 적절성 등에 대한 모니터링, 내규 위반에 따른 조치 등이 미흡함

#### ○ 업무의 수행

- 적합한 감사보고서 발행을 위해 업무수행이사가 투입해야 하는 최소시간 등에 대한 내부 기준이 없어 실제 투입시간이 미미한 사례가 발견됨
- 업무품질검토시 내부적으로 정한 최소투입시간에 미달한 사례, 교차심리로 객관성이 확보되지 않는 사례 등이 발견되었고, 업무품질 검토내용, 자문내용 등에 대한 문서화가 미흡함
- 감사조서가 기한내 취합되지 않은 사례, 취합된 감사조서의 입출고 내역이 누락된 사례 등이 발견됨

#### ○ 모니터링

- 감사업무 및 기타 품질관리제도와 관련하여 내·외부에서 제기되는 의견을 접수할 수 있는 경로(회계법인 홈페이지 등) 마련이 미흡함

## 6) 태성회계법인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일부미흡

###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관리실장 선임 권한이 대표이사가 아닌 사원총회에 부여되어 있고, 사업본부 관련 규정과 사업본부장 및 업무수행이사의 권한 및 책임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품질관리업무 관련 권한과 책임 설계가 미흡함
- 회계법인 내 구성원의 성과평가 시 성과평가 항목별 평가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문서화하지 않아 품질 우선의 성과평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움

###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회계법인 내 구성원의 고용관계 및 주식거래 입력 미비, 감사대상 회사의 지배·종속회사, 특수관계 등 정보 업데이트 미비, 감사대상 회사의 비감사업무 수임 시 세부 내용 검토 소홀 등 독립성 정보 수집 및 관리에 대한 미흡 사항이 발견됨
- 감사계약 체결 전 독립성 여부 확인 절차 및 감사업무 참여자의 독립성 준수 확인서 점검이 미흡함
- 회계법인 내 구성원의 독립성 관련 정책 및 절차 발견 시 내규에 따라 징계 또는 성과평가에 반영하는 절차가 미비함

###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대상 회사의 수임 평가 시 위험 수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미비하며, 감사계약 체결 이후 위험평가를 수행하거나 계약전 위험평가 시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위험을 형식적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발견됨

감사계약 체결 전 위험평가에서 위험도가 높은 회사에 대한 별도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약 체결 이후 발행된 감사보고서 등 추가정보 입수에 따라 위험평가를 재수행하는 절차가 미비함

## ○ 인적 자원

- 신규 채용 전 적격성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법인 차원의 공식적인 채용 승인 절차가 없으며, 이사 승진 시 품질관리 요소를 반영하는 정책이 없고, 회계법인 내 구성원에 대한 교육·연수 절차가 미비함
- 감사업무 배정시 담당 이사 등의 업종별 전문성 고려가 미흡하며, 감사업무 배정을 위한 가용시간 검토 시 비감사업무 수행시간 고려 절차가 미비함
- 감사업무시간 입력·승인 관련·수정 등에 대한 통제 및 검토 절차가 미흡하여 업무시간의 사전·지연입력 및 지연승인·미승인 사례 등이 발견되었으며 위반 사항에 대한 법인 차원의 불이익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음

## ○ 업무의 수행

- 업무수행이사가 감사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가 미흡하며, 감사조서가 충실히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업무수행이사의 충분한 감독 및 검토가 미비한 사례가 발견되었음
- 업무품질관리검토 완료 전 감사보고서 발행, 업무품질관리검토 투입시간 내부권고 수준 미달 등의 사례가 발견되었고, 내규상 사전심리 요청기한이 지나치게 짧으며, 사전심리 검토 내용에 대한 문서화가 미비함
- 감사조서의 지연 입고 사례가 발견되었고, 입고된 조서 출고 시 임의 변경방지 등 장치가 미비하며, 분사무소 창고에 보관 중인 서면조서의 경우 전산으로만 입·출고를 관리하고 실사 등을 통한 관리가 미흡함

## ○ 모니터링

- 사후심리 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 완료 기한이 없고, 개선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미비함

### (3) 「라」 군 회계법인

#### 1) 동아승강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일부미흡

#####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대표이사가 2인임에도 내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대표이사 별 업무분야를 명확히 정하지 않아,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지정 등 품질관리업무에 대한 각 대표이사의 권한 및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며, 사업본부의 구성과 사업본부장의 선임 등 사업본부 관련 규정이 없고, 사업본부장의 권한 및 책임에 대하여 규정하지 않음

- 내규에서는 이사 등 구성원에 대하여 품질관리요소를 고려한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등급별 성과급 한도만을 규정하고 실제로는 각 팀에서 성과급을 임의로 결정하여 지급함에 따라, 평가등급이 낮거나 동일한 평가등급 내에서 성과평가점수가 낮은 구성원에게 더 높은 성과급을 지급하였고, 일부는 등급별 성과급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도 있으며,

이사 등 구성원에 대한 퇴직금 산정 방법을 내규에 명시하지 않아 품질관리 요소를 반영하지 아니한 성과급을 퇴직급여 명목으로 지급할 우려가 있음

- 2022.5.3.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사임 후 2022.6.2. 후임자를 신규 채용하고 2022.7.5. 사원총회를 개최하여 동 후임자를 이사로 선임하였는 바, 2022.5.4. ~ 7.4. 기간 중 상기 법규에 따른 적격한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를 두지 않은 사실이 있음

#####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감사업무 참여자가 업무 수행 전 시스템을 통해 독립성준수확인서 서명 시 서명일자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고, 서명 누락 또는 감사업무 참여 이후에

업무수행 전 독립성 준수 확인서에 서명을 하는 등 독립성 확인이 미흡한 사례가 있으며,

또한, 소속 공인회계사 상당수가 내규에서 규정한 주식거래 입력기한(사유 발생일로부터 2주 이내)을 초과하여 거래내역을 입력하고 있으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고용관계에 대한 정보를 시스템에 충실히 입력하지 않는 등 독립성 점검시 필요한 정보의 수집이 미흡함

-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중 일부는 품질관리실이 검토하지 않아 담당이사 등의 임의적인 구분에 따라 독립성 점검이 누락될 수 있고, 품질관리실이 검토하는 경우에도 세부 업무내용을 계약서 등을 통해 확인하는 정책과 절차가 없어 비감사업무 관련 독립성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품질 관리실 등이 발견하지 못할 위험이 있으며,

감사 예정 고객에 대한 구성원의 독립성 충족 여부를 시스템을 통해 회신받고 있으나 회신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감사계약을 체결하여 법인 차원의 독립성 충족 여부가 완전하게 확인되지 않았고,

'21년 주식거래에 대한 샘플 점검시 거래내역서 및 잔고증명서의 완전성 및 신뢰성을 확인하지 않는 등 주식 거래 및 보유내역에 대한 충실한 점검이 미흡하였음

####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계약전 위험평가 결과가 '높음'으로 평가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수행 단계 전반에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가 없으며,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수임여부를 평가하면서 위험평가 항목에 대한 판단 근거를 기재하지 않고 회사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는 등 계약전 위험평가 시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위험평가가 미흡한 사례가 발견됨

## ○ 인적 자원

- 이사를 포함한 구성원의 특정 산업에 대한 전문성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 않고, 감사업무 배정시 담당이사 등의 업종별 전문성 고려가 미흡하며, 감사업무 배정을 위한 가용시간 검토시 비감사업무 수행시간을 고려하지 않음
- 신규 채용시 채용 전 적격성 등을 확인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사업부에서 내규에 따른 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채용 여부를 결정하며, 이사 승진시 업무품질과 윤리적 원칙 등 품질관리 요소를 반영하는 정책과 절차가 미흡하며,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참여할 업무와 역할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교육·연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감사업무시간 관리 시 구성원의 업무투입시간의 사전입력이 가능하고, 업무투입시간 미승인에 대하여 징계조치하거나 성과평가에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감사보고서에 첨부하기 위해 집계되는 시간이 승인된 시간이 아닌 구성원이 입력한 시간으로 집계되는 등 감사시간 관련 통제 절차가 미흡함

## ○ 업무의 수행

- 업무수행이사의 최소투입시간 등 감사업무 관련 감독·검토 업무에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으며,  
  
감사대상 회사와 산업의 특성 및 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사계획 및 감사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기업 및 기업환경에 대한 이해, 위험평가 관련 조서 및 전산감사 전문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이해 관련 조서 등이 충실히 작성되지 않았음에도 충분한 감독 및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확인됨
-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투입시간이 내부 권고수준에 미달 하거나 내규에 정해진 업무품질관리검토 요청일을 경과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청하는 등 충실한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할 위험이 있음

- 취합 완료 후 출고되는 서면 조서의 임의 변경·추가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비하며, '17년 이전의 감사조서는 엑셀로 관리하면서 조서권수를 기재하지 않거나 '18년 이후 조서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조서 중 상당 기간 출고 상태로 표시된 조서가 있음에도 사유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외부 보관을 위해 조서 이관 시 조서권수를 확인하지 않으며 외부 보관 감사 조서에 대한 실사 등을 수행하지 않아 적절한 보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함

#### ○ 모니터링

- 사후심리 결과 발견된 미비점의 영향 평가, 해당 미비점이 신속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지 여부 및 개별 업무에 대한 적합한 개선조치 결정 등을 수행하지 않아 부적합한 보고서나 중요 절차 누락 등이 적시에 적절히 수정 및 보완되지 않을 소지가 있음

## 2) 선일회계법인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일부미흡

###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성과급 중 일부에 대해서만 성과평가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어 품질우선 보상 여부의 확인이 곤란하고,

성과평가 시 실질적으로는 감사업무 투입시간이 최종 성과평가에 가장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그 외의 감사업무 품질 지표가 성과평가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

###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감사업무 참여자가 독립성준수확인서에 감사 참여 후 지연 서명하거나 감사 착수 전 또는 감사업무 종료 시 서명 누락 등 독립성 확인 미흡 사례가 발견되었고,

소속회계사 혹은 배우자의 고용관계 현황, 감사대상회사 종속회사 정보의 ERP시스템상 불완전 입력 또는 갱신 미흡 사례가 발견됨

- 소속 공인회계사가 내규상 주식거래 입력기한을 초과 하여 거래내역을 입력하거나 주식거래에 대한 표본점검 시 예탁결제원 자료에서 확인되는 증권계좌에 한하여 거래내역을 점검하고 있어 주식거래의 완전성 확인이 일부 미흡하고,

구성원이 감사대상회사의 주식을 취득하여 시스템에 입력하더라도 시스템 알람 등을 통하여 품질관리실이 이를 적시에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통제 절차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계약전 개별 항목별 위험평가 내역을 최종위험과 연계하여 위험이 높은 회사를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미비하고,

계약전 위험평가 결과가 '높음'으로 평가된 회사에 대해서는 감사수행 단계 전반에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가 필요함에도 이에 대해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가 없음

## ○ 인적 자원

- 감사업무 배정 시 업무수행이사별 이사의 전문성, 가용시간 및 역량 등을 고려하는 절차 운영이 일부 미흡함

- 채용 전 적격성 확인이 미흡하고 분사무소의 경우 내규에 따른 경영지원 실장의 승인 없이 채용을 결정하고 있으며, 구성원이 참여할 업무와 역할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교육·연수 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음

- 감사업무시간의 입력 및 승인기한이 지나치게 길고, 입력기한 경과 후에도 입력에 제한이 없거나 감사업무시간을 대표이사가 승인하는 등 감사 투입 시간의 적시성 및 정확성 확보가 어렵고,

승인된 업무시간의 수정 시 사유를 형식적으로 기재하여도 승인이 이루어 지거나 구성원별로 입력한 시간의 합리성 및 완전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미수행하는 등 감사업무시간의 적정성 검토가 일부 미흡하며,

ERP시스템상 집계된 감사업무 시간이 사업보고서에 공시된 감사업무 시간과 합리적인 사유 없이 불일치하는 등 감사업무시간의 공시 관련 설계 및 운영이 일부 미흡함

## ○ 업무의 수행

- 위험에 대한 대응 조서, 전산시스템의 이해 관련 조서 등 작성 미흡 사항에 대한 충분한 감독 및 검토가 미흡함

- 업무품질관리검토자의 교차심리 사례가 있고, 업무품질관리검토 과정에서 작성하는 심리사항 점검표는 체크리스트로 작성하고 있어 구체적인 검토 내용 등 업무품질관리검토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에 대한 문서화가 미흡함
- 취합 완료 후 출고되는 서면 조서의 임의 변경·추가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미비하고,

감사조서 실사 수행 내역을 문서화하지 않아 감사조서의 보관 및 관리 실태에 대한 기록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전자조서는 조서관리담당자의 승인 없이 담당이사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의 재량으로 열람 또는 다운로드 권한이 부여되고, 반납기한 규정이 없는 등 감사조서 입출고 관리가 미흡함

#### ○ 모니터링

- 사후심리 시 발견된 미비점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기준이 미비하여 미비점의 영향 및 신속한 시정조치 필요 여부에 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있으며,

사후심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법인 차원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후심리 관련 절차 및 운영이 미흡함

### 3) 선진회계법인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일부미흡

####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를 사원총회가 선임하도록 하여 외감법규에 부합하지 않으며, 품질관리 관련 내규 등의 정비 및 사원총회 등 의사록 관리가 미흡하고, 품질관리규정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며, 대표이사가 조직의 품질지향 문화를 촉진하기 위해 구성원들에게 지속적으로 관련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지 않음
- 이사에 대한 성과급 지급시 성과평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거나, 성과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성과급을 지급하였으며, 이사 외 구성원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한 상여금의 구체적인 기준 등을 마련하지 않음

####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주식 거래내역의 미등록, 등록오류 등이 발견되며, '독립성유지확인서' 등의 제출일자가 임의 변경이 가능하고, 구성원의 배우자 주식거래 등 정보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채권·채무 내역의 등록이 미흡하고, 회계법인과 감사 예정 법인간 채권·채무관계 확인을 위한 장기미회수채권 내역의 관리가 미흡함
- 감사수임시 독립성 이슈 여부에 대한 품질관리실의 확인이 미흡하고,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수행 전 감사 등과의 협의·동의에 대한 관리가 미흡하며, 비감사 계약의 등록관리가 미흡하여 독립성 검토가 누락될 소지가 있음

####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업무 수용과 유지를 위한 위험수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으며, 고위험으로 평가된 회사를 관리하기 위한 정책과 절차, 계약전

위험평가과정에서 파악된 위험에 대한 해결 여부 확인 절차, 위험평가 후 추가 정보수령에 따른 위험평가 재수행을 고려하는 절차 등을 마련하고 있지 않고, 위험평가 완료전 감사계약을 체결하거나, 작성미흡 사례가 발견됨

## ○ 인적 자원

- 감사업무 시간이 적시에 입력·승인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고, 수정사유 기재 없이 기존 승인권자의 승인만으로 수정이 가능한 등 수정 절차와 관련한 통제가 미흡하며, 승인시간이 아닌 구성원이 입력한 감사시간으로 공시하는 등 감사업무시간 관리가 미흡함
- 업무수행이사의 적격성 및 역량을 확인하지 않고 감사업무를 배정하거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 관리가 미흡하며, 특정이사에게 감사업무가 집중 배정되는 등 감사업무 배정 관련 통제절차 운영이 미흡함
- 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참여할 업무와 역할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교육·연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이사 승진 요건으로 품질관리 평가 결과를 고려하지 않음

## ○ 업무의 수행

- 전산감사 관련 전문가의 참여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하는 통제절차가 구축되어 있지 않고, 관련 문서화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작성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됨
- 업무품질관리검토 요청기한을 정하지 않아 충분하고 적합한 사전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위험이 있으며, 사전심리 누락, 감사보고서일이 사전심리완료일보다 빠른 사례, 사전심리시간이 내부권고 기준에 미달하는 사례 등이 발견됨
- 감사보고서 취합기한을 도과하여 취합한 사례가 발견되었고, 서면조서에 대한 실사를 수행하지 않으며, 분사무소의 서면조서 및 분할 이전 수행한 감사업무 조서에 대한 관리가 미흡함

## ○ 모니터링

- 사후심리 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 기한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고, 실제 보완 및 개선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음

#### 4) 세일원회계법인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일부미흡

#####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각 본부대표가 품질관련 손해발생시 감사수행팀 및 담당이사와 연대책임을 부담하고 채용 및 감사업무를 배정, 품질관리업무 담당자 평균연봉이 소속 공인회계사 평균연봉에 미달하는 등 조직운영시 업무수행 품질 고려가 미흡함
- '03년~'13년 중 前 대표이사가 회계법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나 장기간 법적 미조치 상태로 방치되는 등 사원총회, 운영위원회, 준법감시인과 같은 지배기구 운영이 미흡함
- 성과 평가시 구체적인 평가기준이 미비하고 평가 변별력이 부족하고 일부 평가 대상자가 미평가되고 점수산출 오류가 발생하는 등 품질지향 내부문화를 위한 보상체계 관련 절차의 운영이 미흡함

#####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독립성 준수 확인서에 일자누락, 서명미비, 지연 또는 미제출, 감사대상 회사의 지배·종속회사 정보, 소속 회계사 등의 채권·채무관계 등의 ERP 시스템 입력기한 미준수 및 미준수에 대한 미조치, 소속 회계사 배우자의 주식거래정보 관리 시스템 부재 등 독립성 정보 수집·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이 미흡함
- 신규 감사업무 수임을 구성원들에게 알리지 않아 독립성 점검이 누락될 소지가 있고, 비감사업무 계약서의 ERP시스템 미등록으로 품질관리실의 확인이 누락될 수 있으며, 감사대상회사의 비감사업무를 품질관리실의 승인없이 수임하거나 회사의 감사 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 절차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주식 미거래로 ERP시스템에 등록하는 소속 회계사의 주식거래를 한국 예탁결제원의 실질주주명부로만 점검하는 등 독립성 점검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이 미흡함

####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업무 수임제한 여부를 관리하는 시스템과 점검절차가 부재, 계약전 위험 평가표의 항목별 평가를 최종 결론에 반영하는 체계적인 기준이 없어 업무수행이사가 임의로 판단, 계약후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여 재평가하는 절차가 미비하고,

계약전 위험평가표의 일부 항목은 작성이 누락되거나 품질관리실이 동 위험평가표를 승인하기 전에 감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업무의 수용 및 유지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이 미흡함

#### ○ 인적 자원

- 규정별로 업무수행이사 및 업무팀 배정 책임자에 대한 정의가 불일치하는 등 일부 내규가 정비되지 않고, 자유수임 비상장회사의 업무는 수임한 이사가 담당하는 등 업무배정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이 미흡함

- 채용시 징구하는 징계 이력 조회기준일 등에 일관성이 없고, 내규가 아닌 각 본부대표의 추천 및 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이사를 선임하고 업무품질 관련 내규 위반 징계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등 인적자원 관리 절차 운영이 미흡함

- 감사업무 수행 전, 기한 경과후 입력 등 감사업무시간의 ERP시스템 입력에 대한 통제가 적절하지 않고, 승인권자의 검토없는 자동승인, 비합리적인 업무시간 입력 미점검 등 감사업무시간 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이 미흡함

#### ○ 업무의 수행

- 업무수행이사의 필요 감사업무시간 및 비율 등을 내규로 정하지 않고 성과평가에도 최소 감사업무시간 충족 여부를 반영하지 않는 등 업무지시, 감독, 검토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가 미흡함

- 최소 사전 심리시간 관련 내규가 없고, 발행일에 임박한 사전심리 등 사전심리 절차가 불충분하고, 사전심리자의 검토사항 및 업무팀의 보완 내용 등을 감사조서에 포함하지 않는 등 업무품질관리검토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이 미흡함
- ERP시스템으로 관리하는 일부 조서는 취합기한 초과하거나 입출고 기록이 누락되고 재입고 조서의 임의 변경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가 없는 등 감사조서 관리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이 미흡함
- 분기마다 징구하는 '비밀유지확인서'를 다수가 미제출하거나 지연제출하고, 법인 이메일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상용 이메일로 감사관련 정보를 송수신하는 등 감사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과 절차 마련이 미흡함

#### ○ 모니터링

- 사후심리 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실제 보완 및 개선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있어 부적합한 보고서나 중요 절차 누락 등이 적시에 적절히 수정되지 않을 소지가 있는 등 사후심리 관련 정책과 절차의 설계 및 운영이 미흡함

## 5) 예일회계법인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일부미흡

###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매 사업연도 종료 후 실시하는 종합성과평가 외에 분기평가(중간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세부 평가 방법 등을 규정화하지 않고 있으며, 평가근거 등을 문서화하지 않는 등 분기평가와 관련한 절차 마련 및 운영이 미흡하고, 종합성과평가 등급에 따른 성과급 지급률을 마련하지 않아 동일 성과평가 등급에도 상이한 성과급 지급률을 적용하는 등 성과평가 결과와 보상을 연계하는 정책 마련 및 운영이 미흡함

###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구성원인 소속회계사 혹은 배우자의 겸직관계 현황, 금융기관 등과의 채권·채무관계를 ERP시스템에 입력하지 않은 경우, 독립성 위반 해당 유무 또는 입력 누락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내규상 주식 최초 취득 및 최종 처분 이후 2주 이내 거래내역을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ERP시스템으로는 등록일이 확인되지 않아 적시성의 검증이 어려움

- 반기별 주식거래 점검시 주식 미거래로 신고한 구성원에 대해 증권계좌 보유 현황, 거래내역 등을 확인하지 않고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확인만으로 점검을 종결하여 실제 주식거래 여부 확인이 누락될 수 있고,

감사 수임시 독립성 충족 여부를 ERP시스템상으로만 개별적으로 확인하고, 소속 구성원들에게 이메일 등을 통해 계약 수임 예정 사실을 알리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아 독립성 점검이 누락될 소지가 있으며,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수행 전에 공인회계사법에 따라 회사의 감사 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를 받지 않은 사례가 일부 확인됨

####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계약 전 위험평가지 개별 항목별 평가 내역이 최종 위험수준(높음, 보통, 낮음 중 선택) 결정시 체계적으로 연계되지 않아, 담당이사의 주관적인 판단으로 최종 위험수준을 결정하고 있으며,

위험평가지 일관된 기준이 없어 전기 감사의견 변형, 직권지정 대상 등 높은 위험이 예상되는데도 최종위험을 '낮음' 또는 '보통'으로 평가하면서 담당이사 및 승인권자의 의견을 기재하지 않는 등 위험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감사계약 체결 이후 전기 감사의견변형 여부 또는 계속기업 가정 불확실성 등에 대한 정보가 입수되더라도 이를 고려하여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위험을 재평가하는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으며,

'20~'22사업연도 계약전위험평가표를 표본 점검한 결과, 위험평가 항목 기재 미흡, 전임감사인 관련 항목 미기재, 최종결론에 대한 의견 및 사유 등 미기재 등 일부 감사계약은 미흡하게 작성하였음

#### ○ 인적 자원

- 구성원은 감사업무 수행 전에도 감사업무시간 입력이 가능하며, 감사업무 수행 이후 감사업무시간 등록 및 제출 기한이 경과하더라도 입력에 제한이 없는 등 감사업무시간 입력에 대한 통제가 미흡하고,

감사업무시간을 실제 업무수행일 이전에 등록 및 제출한 사례, 기한이 경과한 후 등록 및 제출하거나 승인한 사례, 등록 및 제출한 감사업무 시간을 승인하지 않은 사례가 발견됨

## ○ 업무의 수행

- 일부 감사조서\*에 대해서 충분한 감독 및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 감사대상회사와 산업의 특성 및 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사계획 및 감사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기업 및 기업환경의 이해 조서, 위험평가 관련 조서 및 전산감사 전문가의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의 이해 관련 조서 등

- 내규에 따라 감사보고서 발행예정일의 3일전까지 사전심리를 요청해야 하나, 사전심리 요청기한 준수 여부가 관리되지 않고 있으며,

사전심리자가 검토한 '심리사항 점검표'를 감사조서에 포함하나, 동 점검표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작성되어 사전심리자의 검토사항 및 업무팀의 보완내용, 의견 등 구체적인 사전심리 내용의 확인이 어려움

- '20~'21 사업연도에 발행한 일부 외감대상 법인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사조서를 지연 취합하였음

## ○ 모니터링

- 감리대상기간중 실시된 사후심리시간을 점검한 결과, ERP시스템을 통해 집계된 사후심리시간과 불일치한 사례가 발견되는 등 사후심리에 투입된 시간의 적정성을 모니터링하는 절차가 미흡하고,

사후심리 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 기한을 명확히 정하지 않고, 개선 이행여부도 확인하지 않고 있어 부적합한 보고서나 중요 절차 누락 등이 적절히 수정·보완되지 않을 소지가 있음

## 6) 한길회계법인

미설계 : 해당사항 없음

미운영 : 해당사항 없음

일부미흡

### ○ 회계법인 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품질관리 관련 일부 중요한 정책과 절차를 명시적으로 규정화하지 않았거나, 내규와 달리 운영하고 있음
- 이사 및 구성원에 대한 평가시 감사품질을 반영하고, 그 평가등급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음에도, 성과급 지급시 평가결과와 상이하게 성과급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 ○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소속 공인회계사 본인 및 배우자의 주식거래내역을 등록기한을 초과하여 지연등록한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이사로 등기된 공인회계사 중 일부의 배우자 고용관계 관련 정보수집관리가 미흡하며,  
이사 교체의무 정보의 정확성 검증 및 이사교체의무 점검과의 연계성이 일부 미흡함
- 감사대상 회사에 대한 비감사업무 수행 전에 회사의 감사 등과의 협의 또는 동의를 받지 않고 해당 비감사업무를 수행한 사례가 일부 발견됨

### ○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감사업무 수용과 유지를 위한 절차의 운용과 관련하여 내규상 신규 감사 대상회사 수임시 산업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인력 보유 여부, 충분한 가용 인력 보유 여부 등 업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 문서화하고 품질관리실에 제출하여 대표이사의 결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감사계약 체결 후 전기 감사결과 등 중요정보를 추가로 입수하여 확인하는 위험평가 재수행과 관련한 통제 절차가 미흡하고,

감사계약 체결 후 위험평가의 실시, 위험평가표의 작성 미흡, 감사위험의 판단 근거와 감사계획 반영 여부 등 기재 미흡 및 기초정보 부실 기재 등 운영상 미비점이 발견됨

## ○ 인적 자원

- 지정감사업무를 제외한 감사업무 배정시 사전 감사업무 배정안 제출 및 검토 절차 등 업무배정 관련 절차 운영이 미흡함
- 이사 승진 대상자 심사시 품질관리 요소 및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이 미흡하고, 구성원에 대한 업무와 역할에 상응하는 체계적인 교육·연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 업무의 수행

- 정보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와 평가조서의 결론을 반영하는 통제절차가 미흡하며, 해당조서를 미흡하게 작성한 사례가 일부 발견되고, 감사업무 업무 수행이사의 감사투입시간이 내부권고 수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일부 발견
- 감사보고서일 이후에 사전심리를 완료한 사례, 사전심리 담당자의 심리투입 시간이 미흡한 사례 또는 내부권고 기한을 도과하여 사전심리를 요청한 사례가 일부 발견됨
- 감사조서 보존의무 관리가 미흡한 사례, 감사조서를 감사보고서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에 취합한 사례가 일부 발견되었으며, 내용물의 원형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통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등 조서의 임의 변형·추가 방지를 위한 통제절차가 미흡함

## ○ 모니터링

- 사후심리 결과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개선 및 보완 기한을 명확히 정하지 아니하고, 보완 및 개선 이행여부를 확인하지 않음

(참고1)

## 품질관리시스템의 구성요소별 품질관리기준의 주요 내용

---

### 1. 회계법인내 품질에 대한 리더십 책임

- 회계법인은 품질이 업무수행시 핵심이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는 내부문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나 사원총회가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지도록 요구하여야 함
- 외부감사법에 따라 실시되는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의 대표자는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업무 설계 및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를 담당하는 이사 1명을 지정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최고경영자나 사원총회로부터 품질관리시스템의 운영책임을 부여 받은 사람이 그 책임을 맡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능력, 그리고 필요한 권한을 갖도록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2.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및 그 구성원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 등이,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이 요구하는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독립성에 관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함
  - 독립성 요구사항에 미치는 전반적인 영향을 회계법인이 평가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이사는 의뢰인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회계법인에게 제공함
  - 회계법인의 구성원은 독립성에 위협을 발생시키는 상황이나 관계를 회계법인에게 신속히 통보하여 적합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관련된 정보를 축적하고 적합한 구성원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 다음 사항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회계법인과 그 구성원이 독립성 요구사항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를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회계법인이 독립성 관련 기록을 유지하고 갱신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수용 가능한 수준을 초과한 독립성 훼손위험에 대해 회계법인이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독립성이 요구되는 모든 구성원으로부터 최소한 연1회 독립성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고 있다는 서면확인서를 받아야 함

□ 또한, 회계법인은 다음의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동일한 상위직 구성원을 장기간 인증업무에 참여시킬 때 발생할 수 있는 유착위험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결정하는 기준을 설정함
- 상장기업의 재무제표감사의 경우,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에 따라, 명시된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업무수행이사와 업무품질관리검토에 책임을 지는 개인, 그리고 해당 되는 경우, 기타 교체대상자를 교체하도록 요구함

### 3.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의 수용과 유지

□ 회계법인은 다음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의뢰인 관계 및 특정 업무를 수용하고 유지할 것이라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구축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업무수행을 위한 적격성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시간과 자원 등 역량을 가지고 있음
- 회계법인은 관련 윤리적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음
- 회계법인은 의뢰인의 성실성을 고려하였으며, 성실성이 결여되었다고 결론을 내리게 할 것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아니함

□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 사항을 요구하여야 함

- 새로운 의뢰인과 업무를 수용하기 전, 기존의 업무를 유지할 것인지 여부를 정할 때, 그리고 기존 의뢰인과의 새로운 업무를 수용할 것인지를 고려할 때, 회계법인은 해당 상황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한 정보를 입수함
- 새로운 의뢰인이나 기존 의뢰인의 업무를 수용할 때 잠재적인 이해상충이 식별된 경우,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를 수용하는 것이 적합한지 여부를 결정함
- 이슈가 식별되었음에도 회계법인이 의뢰인 관계나 특정 업무를 수용하거나 유지하기로 정한 경우, 회계법인은 이러한 이슈가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를 문서화함

#### 4. 인적 자원

- 회계법인은 적격성과 역량을 갖추고 윤리원칙을 준수하는 충분한 인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각각의 업무에 대한 책임을 업무수행이사에게 배정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업무수행이사의 성명과 역할을 의뢰인의 경영진의 핵심구성원과 지배기구에게 커뮤니케이션함
  - 업무수행이사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적격성, 역량 및 권한을 가짐
  - 업무수행이사의 책임은 명확히 정의되고 있으며 해당 업무수행이사에게 커뮤니케이션됨
- 회계법인은 또한 다음 사항을 위해 필요한 적격성과 역량을 보유한 적합한 구성원에게 업무를 배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해당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5. 업무의 수행

- 회계법인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에 따라 업무가 수행되며, 회계법인이나 업무수행이사가 상황에 적합한 보고서를 발행한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에 대한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어렵거나 논쟁의 여지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적합한 자문이 이루어짐
  - 적합한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이 이용 가능함
  - 이러한 자문의 성격과 범위, 그리고 해당 자문에 따른 결론이 문서화되며, 이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는 사람과 자문을 제공한 사람이 모두 동의함
  - 자문에 따른 결론이 실행됨

- 회계법인은 적합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한 결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제공하는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함
  - 모든 상장기업 재무제표감사에 대해서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함
  - 상장기업 재무제표 감사 외의 모든 역사적 재무정보에 대한 감사와 검토, 기타 인증업무 및 관련 서비스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수행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정함
  - 상기 내용에 따라 정해진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업무품질관리검토를 요구함
-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의 성격, 시기 및 범위를 정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보고서일자가 업무품질관리검토 전의 일자가 되지 않도록 요구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업무품질관리검토에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요구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유의적 사항을 업무수행이사와 토의
  - 재무제표 또는 기타 인증대상정보 그리고 보고서 초안을 검토
  -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 및 도달된 결론과 관련된 일부 업무문서를 선정하여 검토
  - 보고서를 작성할 때 도달된 결론을 평가하고 보고서 초안이 적절한지 여부를 고려
- 회계법인은 다음에 관한 문서화를 요구하는, 업무품질관리검토의 문서화에 관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업무품질관리검토에 대한 회계법인의 정책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하였음
  - 업무품질관리검토는 보고서일 이전에 완료되었음
  - 검토자는 업무팀이 내린 유의적 판단과 도달된 결론이 적합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만한 어떠한 미해결 사항도 인지하고 있지 아니함
- 회계법인은 해당 업무의 보고서가 확정된 후 업무팀이 적시에 최종업무파일의 취합을 완료하도록 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업무문서의 비밀유지, 안전한 보관, 무결성, 접근성 및 재생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은 회계법인의 필요나 법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업무문서를 보존하는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6. 모니터링

-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과 관련된 정책과 절차가 관련성이 있고 적절하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합리적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모니터링 절차를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지속적인 고려와 평가를 포함함(주기적으로 각 업무수행이사마다 최소한 1개의 완료된 업무에 대한 검사를 포함)
  - 회계법인에서 모니터링 절차를 수행하기에 충분하고 적합한 경험과 권한을 가진 파트너(들) 혹은 다른 사람들에게 해당 책임이 배정되도록 요구함
  - 업무수행자나 업무품질관리검토자가 해당 업무 검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함
- 회계법인은 모니터링 절차의 결과로 발견된 미비점과 적합한 개선조치를 위한 권고사항을 관련 업무수행이사와 적절한 타 구성원들에게 커뮤니케이션하여야 하며, 발견된 미비점에 대한 적합한 개선조치 권고사항에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개별 업무나 개별 구성원에 대한 적합한 개선조치를 취함
  - 발견사항을 교육 훈련 및 전문성 개발 업무 책임자와 커뮤니케이션함
  - 품질관리정책과 절차를 변경함
  - 회계법인의 정책과 절차를 준수하지 못한 사람(특히 반복적 미준수자)에게 징계 조치를 내림
- 회계법인은 다음 사항을 적절히 다루고 있다는 합리적인 확신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회계법인이 수행한 업무가 전문직 기준과 해당 법규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고충과 진정
  - 회계법인의 품질관리시스템을 준수하지 않는다는 주장

(참고2)

## 舊감사인 지정군 분류기준

□ 회계법인은 「舊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2.에 따라 다음과 같이 5개의 군으로 분류

구분	구분 기준					해당 회계법인
	법 제9조 제4항에 따른 공인회계사 수	직전 사업연도 감사업무 매출액	품질관리 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	손해배상 능력 <sup>주1)</sup>	직전 사업연도 감사대상 상장사 수 <sup>주2)</sup>	
가군	600인 이상	500억원 이상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른 품질관리 업무 담당자(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포함) 수의 120% 이상	200억원 이상	100사 이상	4개 층족
나군	120인 이상	120억원 이상		60억원 이상	30사 이상	4개 층족
다군	60인 이상	40억원 이상		20억원 이상	10사 이상	4개 층족
라군	30인 이상	15억원 이상	2명 이상	10억원 이상	5사 이상	3개 층족
마군	감사인 지정이 가능한 그 밖의 회계법인					

주1) 산정기준일의 직전 사업연도 말 법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적립액 및 손해배상 책임보험의 연간보험료, 「공인회계사법」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액을 합산한 금액

주2) 산정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중에 결산일이 도래하는 주권상장법인 (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는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인 감사대상 회사의 수